

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위원회 등 실비변상 규정

2016년 2월 11일 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) 임원 및 각종(특별)위원회의 위원의 수당과 여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수당”이란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·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에 지급하는 댓가를 말한다.
2. “여비”란 근무지 또는 거주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여행하는 데 소요되는 교통비·숙박비·식비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) 이 규정은 본회 임원 및 법령, 규약 또는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 위원의 수당과 여비(이하 “실비변상”이라 한다)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, 규약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제4조(수당 등) ① 본회 소속 직원 아닌 본회 임원(당연직 제외) 및 위원이 상임위원회, 이사회, 대의원총회 및 각종위원회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본회 소속 직원이 아닌 본회 임원 및 위원이 미리 안건을 배부 받

아 검토하고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별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참석수당은 기본료 7만원을 지급하고 2시간을 초과할 경우 3만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.

제5조(여비) 본회 임원 및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 회장의 명령,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본회 처무규정 제63조 규정의 3급 직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6조(보칙) 임원 및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
부 칙 <2016. 2. 11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